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404
----------	-------

발의연월일 : 2019. 9. 9.

발의자 : 박완주 · 우원식 · 윤일규

송옥주 · 이규희 · 박홍근

송갑석 · 김해영 · 제윤경

오영훈 · 이개호 · 윤준호

김현권 · 인재근 · 신창현

김정호 · 서삼석 · 위성곤

의원(18인)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제도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피해보전을 위해 2005년 도입된 이래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여 왔으나, 직접지불금이 쌀에 집중되고,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됨에 따라 쌀 과잉공급이 심화되고 소규모 농가 및 타 작목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망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이러한 상황에서 직접지불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목표가격 변경만 이루어진다면, 과도한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쌀 과잉 생산과 가격불안정은 해결되지 않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은 미흡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됨.

이에 현행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함으로써 2

020년부터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여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는 한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명칭

법률의 명칭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목적(안 제1조)

법률의 목적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 확립, 제도의 시행 및 그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다. 시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3조, 제4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5년 단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

라. 제도 구성 및 적용대상(안 제5조, 제6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는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

와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과 농지 등을 대상으로 함.

마. 지급대상 농지(안 제8조)

지급대상 농지는 논농업('98~'00) · 밭농업('12~'14) · 조건불리('03~'05)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17~'19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등으로 함.

바. 지급대상(안 제9조)

지급대상 농업인은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또는 '16~'19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자로 함.

사.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및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안 제10조, 11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하여 면적에 관계없이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농업인등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금액을 면적직접지불금으로 지급함.

아. 준수사항(안 제12조, 제13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기본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등 중 재

배면적관리가 필요한 작목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함.

자. 신청·등록 및 사후관리(안 제14조~20조)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변경 신고, 감액지급, 등록제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부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차.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운영(안 제21조~22조)

선택직접지불제도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선택직접지불금을 지급함.

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 운영 심의위원회(안 제23조~24조)

공익직접지불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 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안 제25조~36조)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파. 보칙(안 제37조~제46조)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정보의 공개

및 보호, 명예감시원제도 운영, 포상금 지급, 벌칙, 지도 등의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하. 시행 및 주요 경과조치(안 부칙 제1조~제9조)

2020년 3월 1일부터 법을 시행하도록 하고, 폐지되는 변동직불금의 한시지급('19년산까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의 폐지 및 잔여액 이입조치, 등록제한·심의위원회·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 확립, 제도의 시행 및 그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 한다. 이하 같다)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2.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3. “논농업”이란 지목(地目)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벼, 연근, 미나리, 왕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
4. “밭농업”이란 지목과 상관없이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보리, 밀, 콩, 고추, 마늘, 사료작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
5.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6. “초지”란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7. “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8.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힘써야 한다.

③ 국가는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장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적용대상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기본직접지불제도”라 한다)와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선택직접지불제도”라 한다)로 구성한다.

제6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①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농업인등으로 한다.

②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는 「농어업경영체 육

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또는 초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7조(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기본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기본직접지불금은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이라 한다)과 그 밖의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한다.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 및 사료작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초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20조까지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

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등. 다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으나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초지와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본다.

가. 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나.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2.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등. 다만,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으나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초지와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본다.

가. 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

나.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

3.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다만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등에 한정하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7조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등.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본다.

가.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

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30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 받지 아니한 토지분(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는 경우

2.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농지법」 제36조·제36조의2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에 한정한다)로서 「산지관리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 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5. 제19조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토지. 이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서의 제한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으로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역·지역·단지의 토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토지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본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토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토지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토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 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토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휴경 중인 농지등의 면적은 제외

한다)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4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지급한 지급대상자와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본다.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7조에 따른 지급대상 토지의 등록 면적이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신청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는 자

나. 등록신청 전년도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 면적이 등록신청연도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신청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는 자

4.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5.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제10조(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소농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1.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 다만,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일 경우 소농직접지불금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중 하나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대상자로 하여금 선택하게 할 수 있다.

2.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는 등록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한 기간, 등록신청연도 직전 농촌지역에 거주한 기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제11조에 따라 면적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1. 농가 내 다른 지급대상자가 소농직접지불금을 지급받는 경우
2. 농가 내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
3. 농가 내에 축산업 또는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

③ 소농직접지불금의 구체적인 지급단가, 지급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면적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등

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별로 농업진
홍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농업진홍지역 밖에
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농업진홍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②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의 지급상한면적은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15조에 따른 기본직
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라 한다)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휴경중인 농지등에 대한 의무에 관한 사항
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
지할 것
2. 농약 및 화학비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제13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배면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목을 재배하고자 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등록 농업인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에게 제1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한 농업인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절차, 통보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등록 및 사후관리

제14조(등록신청 및 공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
 2. 제9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3. 등록신청의 기간 및 방법
 4. 그 밖에 기본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 ②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

하는 날까지 농지등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관내경작자[등록을 신청하는 농지등 소재지 관할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등을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와 그 외의 자를 구별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15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의 등록) ① 읍·면장은 제14조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 및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9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등록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등록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재심사 및 등록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 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동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로부터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그 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농업인등이 제9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해당 농지등에 대한 기

본직접지불금 등록자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7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등의 소유·거래 및 휴경 등 등록사항(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및 제18조에 따른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조사·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수거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은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거주지,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농자재판매처, 출하처 등에 출입하여 조사·수거 등을 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수거 또는 장부나 서류의 열람(이하 “조사 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그 대표자, 대리인, 피용자, 이행보조자, 가족 등 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8조에서 같다)가 조사 등 현장에 입회하는 경우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등에 있어서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한 자를

이 조 및 제18조에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로 본다.

⑤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조사·수거 등을 위하여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17조에 따른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비치 대상 서류의 종류, 보관·비치의 기간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2.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우

4.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제9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어 해당 토지분에 대하여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6. 제12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7.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제17조제5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다만,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경미한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8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항목별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에게 등록된 모든 농지등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즉시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직접 관련된 농지등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금액을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위 제재부과금의 산정기준, 부과 및 납부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해당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과금을 모두 완납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과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부당이득금 또는 제

2항에 따른 제재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 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선택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2.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친환경안전축산물소득보조금
 3.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보조금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

조에 따라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선택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직접지불금의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제23조(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공익직접지불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본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단가체계, 준수사항 등의 설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3.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산업통산자원부차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가. 농업인단체의 대표 5명 이내

나.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대표 및 언론인 5명 이내

다. 농업 및 경제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자 5명 이내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제25조(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 정부는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6조(기금의 계정 구분) 기금은 기본형공익직접지불계정, 선택형직접지불계정으로 구분한다.

제27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수입이익금
3. 제28조에 따른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및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6.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및 과태료
7.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28조(차입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조성·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 및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2.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3. 제1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비

4.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30조(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1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업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

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34조(기금 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5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제29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 부수되는 경비로 한다.

제36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7조(정보화 및 개인정보의 이용 · 제공)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

하여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 적정성, 준수사항 이행여부, 지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제19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등을 이용·처리 및 제공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또는 그 기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서로 협조해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등의 이용·처리·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매년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와 수령자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농업인: 성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 수령금액
2. 농업법인: 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 수령금

액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및 제3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서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 ·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농업인등은 등록기준 및 절차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제39조(지도 등의 의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등록신청부터 지급 및 사후관리까지 시행 전반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 · 점검 · 관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 · 운영할 수 있다.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등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감시·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공익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거나 수령한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달성 및 투명성 제고에 모범적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인,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 및 방법,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자
2. 제24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부위원장은 포함한다)으로 위촉되어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자
3. 제40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 등을 한 자
3.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자
4.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에게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사·수거·열람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비치하지 아니한 자.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

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을 2019년산 쌀까지 지급한다.

제3조(기금의 폐지 및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그 잔여액은 이 법 제25조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 이입조치한다.

제4조(등록제한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등록제한 조치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등을 적용받은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등록제한 조치가 끝나는 시점까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 제23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조(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한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처분·조치,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행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는 이 법 시행 이후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의 전출금

②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

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의 규정 및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